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③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란?

Q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대가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연지급 시 금액 산정

Q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13조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 교부한 날, 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사업자가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어음의 도래기일 전에 지급

Q 원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그 도래기일 전에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한 경우에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A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 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발주자의 어음만기일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4. 하도급계약 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범위만 여부

Q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 변제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대물변제가 아니므로 적법하다.

5. 공사비의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범위만 여부

Q 갑이(매출액 1조원) 발주하는 공사를 을(화의업체로서 화의 전 매출액 6천억원)이 수급하되 전체 공사비의 40%를 대물로 결제 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단, 하도급업체의 동기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임)

A 질의내용에 의하면 “갑”과 “을”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관계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